

## “그 사람 이름을 왜 알려고 하니?”... 실명보도와 익명보도

심석태

SBS 뉴미디어부장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① 30대 중반의 여성이 현직 장관인 A씨를 상대로 자신이 딸이라며 친자확인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 ② A장관의 의원 시절 보좌관이었던 B씨가 지난달 27일 동덕여대 교수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학교 측이 임용 규정을 바꾸는 등 석연찮은 구석이 있다는 지적이다.
- ③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전 육군 17사단장 송모 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 ④ 군인권센터는 지난달 27일 성폭력 대책 마련을 위한 육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1군 사령관 장모 대장이 “여군들도 싫으면 명확하게 의사표시를 하지 왜 안 하느냐”라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①과 ②는 모두 당시 현직인 장관에 대한 것이고, ③과 ④는 현직 군 고위 관계자에 대한 것이다. ①보도가 나오자 조선일보는 칼럼에서 “공직자에게도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이 있다”고 해당 기사를 비판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조선일보가 이 칼럼에서 장관은 ‘A씨’로 표현하면서 여성은 ‘미국 시민권자인 진모 씨(35)’라고 성과 나이, 국적까지 밝힌 것이다. ②는 현직 의원 출신 장관 얘기다. 대학에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교육부 장관인데, 대학이 그의 전직 보좌관을 임용 규정까지 바꿔 전임 교수로

채용했다는 것이다(물론 KBS와 같이 장관의 실명을 밝히고 보도한 곳도 있긴 했다).

기사들이 장관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이유는 뭘까. 이들의 장관 내정 소식에서부터 각종 동정 기사들 역시 실명으로 썼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언론은 뭔가 부정적인 기사를 쓸 때는 실명 사용을 주저한다. 그러다보니 이만의 환경부장관과 황우여 장관 겸 부총리는 줄지에 ‘A장관’이 됐다. 시시콜콜한 동정 기사들을 생각해보면 이들이 주요한 관심 인물이 아니어서 A장관이라고 부른 건 분명히 아니다.

③과 ④기사에서는 현직 군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익명보도가 눈에 띈다. 물론 위의 장관들 사례와는 달리 육군 17사단장이나 1군 사령관이 일반 시청자나 독자가 관심을 가질 만한 인물이 아니어서 그냥 ‘모’ 씨로 썼다고 할 수도 있다. 정말 그럴까. 그렇다면 굳이 몇 사단장인지, 몇 군 사령관인지는 왜 썼을까.

국내 언론은 남북 대치 상황을 보도할 때, 기자들에게도 생소한 북한 군 고위 관계자들의 이름과 직책을 깨알같이 밝혀 쓴다. 북한 당 중앙군사위 회의를 보도하면서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리영길 총참모장, 김영철 정찰총국장, 윤영식 총참모부 포병국장, 포병사령관을 지낸 박정천 부총참모장, 김춘삼 중장 등 군 수뇌부와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최부일 인민보안부장 등 공안 기관장들이 대거 참석했다”고 쓰는 식이다.<sup>1)</sup> 우리 군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평소에는 멀쩡히 이름 밝히고 취임 소식까지도 보도하다가 뭔가 부정적 내용일 때면 이름을 슬그머니 흐리는 것이다.

사례를 들려면 끝이 없다. 몇 년 전, 한 프로야구 선수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났다가 붙잡혔다. 당시 언론은 구단을 명시한 채 ‘투수 최모(27) 씨’라고 보도했다. 스포츠 스타들에 대

해서는 신인 드래프트 과정부터 연애 이야기까지 온갖 이야기를 실명을 밝히고 쓴다. 그렇게 관심거리이던 사람이 범죄에 연루되면 약속이라도 한 듯 언론은 이름을 적당히 흐린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로 대법원이 선언한 ‘익명보도 원칙’을 든다. 대법원이 1998년, 범죄 자체를 보도하기 위해 반드시 범인이나 범죄 혐의자의 신원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며, 범인이나 범죄 혐의자에 관한 보도가 반드시 범죄 자체에 관한 보도와 같은 공공성을 가진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선언한 것 말이다.<sup>2)</sup> 이 판결의 대상이 된 사건은 이혼 소송 중인 남편을 청부 폭행하려는 혐의로 구속됐던 여성이 결국은 남편의 무고에 따른 피해자로 드러난 것이었다. 언론은 최초 수사 결과 발표를 바탕으로 이 여성에 대해 단정적이고 선정적인 보도를 쏟아냈다가 뒤서리를 맞았다. 범죄 보도에 관한



북한 당 중앙군사위 회의에 참석한 고위관계자의 실명과 직책을 상세히 밝힌 보도

(출처: 조선일보 2015. 8. 22자 A2면)

1) 『조선일보』, 2015. 8. 22, A2면. 이용수, “재등장한 리영길·김영철, 포격 주도한듯... '砲' 전문가도 이례적 참석:北 黨군사위 비상 확대회의”  
2) 대법원(1998. 7. 14.) 96다H7257 판결

것이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실명보도의 기준을 제시한 판결로 받아들여진다.

2009년 들어 대법원은 실명보도를 해도 되는 경우를 더 구체화했다.<sup>3)</sup> 범죄의 내용이나 양상, 범죄 발생의 배경이나 사회적 영향력, 피의자의 직업이나 지위 등 공적 인물로서의 성격 등을 고려해 실명보도가 가능하다고 밝힌 것이다. 사회적으로 고도의 해악성을 가진 중대한 범죄에 관한 것이거나 사안의 중대성은 떨어지더라도 정치·사회·문화적 측면 등에서 비범성을 갖는 경우, 공적 인물의 업무 연관성 등으로 인해 공공의 중요성을 갖는 경우 등을 실명보도 대상으로 들었다.

실제로 어떤 경우 실명을 써도 될지는 재판을 통해 '종합적 판단'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이 판결로 실명보도 허용 범위가 넓어지긴 했다. 하지만 몇 가지 문제는 여전하다. 먼저 여전히 익명보도를 원칙으로 하고 실명을 써도 되는지를 법원이 판단하는 이 방식은 기본적으로 실명보도를 우선으로 하는 저널리즘의 일반 원칙과 충돌한다. 특히 피의자를 가명이나 이니셜 등으로 흐려서 쓰는 것만으로도 그냥 실명을 쓴 경우보다 언론사의 주의의무가 경감된다고 한 것은 혹 시라도 시비가 걸릴 만한 것은 모조리 적당히 이름을 흐려 쓰는 분위기를 더 조장한다. 범죄 혐의자에 대해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것을 막자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언론사는 이름을 흐려

쓰는 것만으로 보도에 따르는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언론자유를 확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 익명보도 원칙을 들고 나온 이유가 애매하게 된 것이다.

또 하나, 범죄 혐의가 포착돼 국가 공권력이 발동되는 상황은 어떤 의미에서도 그 비밀 보장이 필요한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은 아니다. 역사적으로도 이런 공권력 작용은 언론의 관심사에 앞서 가장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이기도 했다. 무죄추정 원칙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공권력이 함부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만 언론과 사회적 관심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다. 이를 언론과 사회에 대입하면, 확정되지 않은 혐의를 사실로 단정하지 말라는 정도가 적정할 것이다. 언론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태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줄 분위기가 아니어서 딱한 노릇이지만.

익명보도 원칙을 보도 대상의 인권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장치라고 인정하더라도 위에서 예로 든 기사들이 그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익명보도 원칙을 선언한 대법원 판결은 공인이 아닌 일반인들의 범죄를 보도할 때에 해당한다. 그런데 위 기사들의 대상은 하나 같이 고위 공직자들로 공인이다. 대법원은 2009년 판결은 물론 1998년 판결에서도 공인에 대한, 그것도 업무에 관련된 사건에서는 그가 누구인지 보도하는 것에도 공공성이 있다고 봤다. 그런데 정작 언론은 공인에 대해서도 익명보도를

3) 대법원(2009. 9. 10.) 2007다71 판결

남발하고 있다. 이러니 습관성 실명보도 기피증을 의심하게 되는 것이다.

가명이나 이니셜을 쓰는 정도의 익명보도는 인터넷 검색이 보편화된 지금, 애초의 인권보호 목적에서 보면 무용지물일 가능성이 크다. 주변 인사들만이 아니라 누구든 인터넷 검색이라는 약간의 수고만으로도 그가 누구인지 다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송모 소장’은 물론 ‘A모 소장’이라고 한 기사도 있었는데 ‘17사단장’으로만 검색하면 취임식 기사까지 나온다. ‘장모 대장’이라고 쓴 1군 사령관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최모’씨로 소개된 그 투수도 마찬가지. 해당 지역 프로야구 구단은 하나밖에 없고, 그 구단에 최씨 성을 가진 27살 투수는 한 명뿐이다. 이 정도면 포털 연관검색어로 나란히 뜬다. 이런 익명화로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말이다.

기준이 제대로 서지 못하니 어떤 경우 실명을 공개해야 하는지, 또 실명보도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익명 처리를 하는 목적은 무엇인지 온통 혼란스럽다. 범죄 보도만이 아니라 모든 비판적 보도에서 다 그렇다. 전국이 메르스 공포에 빠졌을 때 언론은 제법 오랫동안 환자 발생 병원을 ‘A병원, B병원’으로 표시하고 지역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시청자, 독자들의 공개 요구에도 이런 익명 처리를 계속했다. 정부가 혼란이 생길 수 있다며 비공개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감염병 보도 준칙도 근거로 들었지만 병원명을 공개하지 말라는 일반적 기준은 없었다.

그런데 이런 정보의 비공개가 병원 내 감염

사태를 낳는 등 메르스 확산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부가 뒤늦게 전면 공개로 선회하자 상당수 언론은 정부의 그동안의 비공개 방침에 비판을 퍼부었다. 실명보도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정부에 떠넘기고, 그것이 문제라도 책임을 질 생각조차 않은 것이다. 깊게 뿌리박힌 실명보도 기피증이, 정말 실명보도가 필요한 대목에서조차 언론을 머뭇거리게 만들고 있는 셈이다. 이러다간 정말 사람들이 실명보도가 필요한 이유조차 잊어버리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홍약범 실명보도를 둘러싼 토론회에서의 일이다. 한 인권 변호사는 “그 사람 이름을 꼭 알아야겠느냐”, “그게 도대체 왜 궁금하냐”고 실명 공개론자를 공박했다. 하지만 언론보도는 ‘열린 사회’에서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갖는 사회적 관심의 반영이다. 기자들이 아무리 숨겨도 관련자의 실명이 금방 포털 연관검색어로 뜨는 현상을 생각해보라. 우리가 오래된 무덤에서 자살한 기록들까지 찾아내 당시 시대상을 파악하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언론보도는 그 자체로 오늘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기도 하다. 특히 성급하고 단정적인 보도로 비판적 보도의 대상이 된 사람들에게 너무 큰 피해를 주지 말자는 선한 의도가 사회 전체에 익명의 장막을 치고, 진짜 공적 관심과 감시의 대상이 되고 기록으로 남겨야 할 일들조차 그 속에 숨는 일이 계속되어서는 곤란하다. 많은 사람들이 잊어가고 있는 실명보도의 중요성을 되돌아보고, 익명화가 필요한 이유와 범위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이유다. ─